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608

발의연월일: 2021. 11. 30.

발 의 자: 송재호·강준현·김영배

남인순 · 류호정 · 오영훈

위성곤 • 조오섭 • 최종유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요금과 배송시간 등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배송시간과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도서와 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같은 상품군에서도 사업자들 간에 특수배송비 차이가 많이 남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도서와 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삶의 불균형과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까지 불러 올 수 있어 난배송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물류 배송비에 대한 적정 금액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배송비 절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선정과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와 산간지역 등 난배송지역에 대한 계획의 수립, 물류배송비의 적정금액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난배송지역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택배사를 지정하여 공용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물류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배송이 어려운 산간, 도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하 "난배송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택배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난배송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난배송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 도선비 등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난배송지역의 배송제도 개선을 위하여 난배송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구성 및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난배송지역의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배송비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의2. 배송이 어려운 산간, 도
	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이하 "난배송지역"
	이라 한다)에 대한 택배서비
	스 개선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3조의2(난배송지역에 대한 재
	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난배송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물류비, 도선비 등 배송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
	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난배

송지역의 배송제도 개선을 위하여 난배송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구성 및 전담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난 배송지역의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